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2020년도 2/4분기

자체 감사결과 보고

2020. 9. .

감 사 위 원 회

1. 도시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

☐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도시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해 시설관리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

☐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서울대공원, 중부공원녹지사업소

❍ 감사기간 : 2019. 6. 10. ~ 7. 12.(기간 중 25일)

❍ 감사인원 : 감사2팀장 외 7명 (공익감사단 2명 포함)

❍ 감사범위 : 2016. 1. 1.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

☐ 감사 중점 사항

❍ 공원·동물원 시설 운영·관리 실태 적정 여부

❍ 공원조성 및 시설유지·보수 등 시설공사 적정 여부

❍ 공원 편익시설 및 위탁시설 허가 등 관리·운영 적정 여부

❍ 공원 운영관련 인력관리·예산·물품관리 적정 여부 등

☐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 상	징계	시정(금액)				주의*	개선	권고	통보	고발
총건수	신분상조치 인원	재정상조치 (금액)	(금액)	(인원)	소 계	추 징 (환수)	감 액	기 타 (부과, 환급신청)	(인원)				(인원)
45	28	3 50,526	-	3 (3)	3 50,526	-	-	3 50,526	23 (25)	1	-	15	-

※ 주의요구 인원 25명(훈계 12, 주의 13)

▢ 총 평

서울대공원 및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도시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,

▢ **서울대공원**은 '17년부터 '19년 6월까지 동물복지, 종보전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운영 국제인증(AZA)*을 획득하기 위해 시설개선 노력에 중점을 두고 서울동물원, 서울랜드 및 캠핑숲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* AZA(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)인증을 '19. 9.17.에 획득함.

▢ **중부공원녹지사업소**는 남산공원, 북서울꿈의숲, 낙산공원, 중랑캠핑숲, 경춘선숲길공원, 용산가족공원 등 도심의 주요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유지·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

▢ **하지만, 이번 감사결과 서울대공원은 공원시설개선 공사관련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, 공용물품 검수 부적정 등 총 26건,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음.**

▢ **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 및 주의요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는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하였으며,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담당자 및 감독자 등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하였음**

▢ **현재 행정상 조치 42건 중 34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,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8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, 징계요구 3건 등 신분상 조치 28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.**

▢ **금번 감사를 통하여 서울대공원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.**

▢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제목	관련기관	처분유형	조치할 사항	조치현황
1	공원시설개선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	서울대공원	징계 및 주의요구	- 향후 각종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에 대한 검사 및 검수 시, 시공내역 및 성과품 등의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 철저(관련자 신분상 조치) - 계약을 미이행한 에듀건설(주)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검토	조치중
2	서울동물원 국제인증(AZA)대비 시설공사 분할발주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,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	조치중
3	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및 부과업체 제재 소홀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각종 공사·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시, 지연배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4	공사 하자검사 소홀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담보존속기한이 정해진 공사(물품, 용역)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	조치완료
5	도로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소홀	서울대공원	통보	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“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”를 발주할 때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방안 강구	조치중
6	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업무 소홀	서울대공원	통보	- 건축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㈜아이소파플레이 등 2개 업체를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건축업자의 등록관청에 요구하고,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 업무 철저	조치완료
7	동물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준공검사 등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계약절차·이행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동물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업체가 제출한 ‘하자보수 보증서’에 따라 하자보증금 청구에 대해 검토 및 조치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
연번	처분요구제목	관련기관	처분유형	조치할 사항	조치현황
8	수의계약 분리발주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사업 추진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 업무 추진 시 통합하여 진행하고,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저하, 예산 증가, 하자 보수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	조치중
9	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15,000천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행 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준수	조치완료
10	매표시스템 운영 용역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 준수하고,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, 예산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11	거리가게 단속용역 운영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거리가게용역 운영관련 근무자의 신분확인 및 근무일지에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근무확인 철저히 하고, 용역대금 지급 시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지급증빙하기 바람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12	온실식물 증감현황 기록관리 소홀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「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」에 따라 온실식물의 증감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기록·관리하고 시장에게 보고	조치중
13	공원 내 가설건축물(공작물 등) 설치 및 사용 부적정	서울대공원	통보	- 시민편익과 사육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, 불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철거하고,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- 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	조치완료
14	서울대공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노력 미흡	서울대공원	통보	-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의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에 대한 방안 강구	조치중
15	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입찰관리 소홀	서울대공원	통보	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·수익허가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등 업무관리 철저	조치완료

연번	처분요구제목	관련기관	처분유형	조치할 사항	조치현황
16	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업무 소홀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료가 산정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	조치완료
17	공유재산(대형주차장) 사용료 산정 등 관리·운영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·수익허가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 철저 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18	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소홀	서울대공원	시정요구	- 공유재산 임대 관련 지출경비에 대한 공제(환급)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6,600천 원을 환급신청하기 바람	조치완료
19	서울대공원 관리인 숙소 운영 부적정	서울대공원	통보	- 「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운영규정」에 따라 관리인숙소가 적절하게 관리·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	조치완료
20	공무직 직원 채용 관련 서류심사 부적정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평가 시 경력 등 증빙자료 확보 및 검토 등 점수 산정에 철저 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21	환자이송용 전기차 검수 및 개조절차 부적정	서울대공원	징계 및 주의요구	- 물품검수 시, 수량 · 계약규격 · 구성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및 관리감독업무를 철저 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22	공용차량 및 물품(전기카트) 관리 소홀	서울대공원	주의요구	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, 전기카트 등 물품 임차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23	공용차량 관리대장 등 작성 소홀	서울대공원	통보	- 관리·운영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관련 장부를 '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'에 의거하여 통일성 있게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	조치완료
24	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운영 관리 소홀	서울대공원	통보	- 개인영상정보파일 제공 시 제공에 따른 활용,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 철저	조치완료
25	근로소득제 원천징수의무 이행 소홀	서울대공원	통보	-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소득세법 규정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 철저	조치완료

연번	처분요구제목	관련기관	처분유형	조치할 사항	조치현황
26	공무직 직원 급여 등 지급 방법 개선	서울대공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	통보	- 공무직 급여 등 산출·지급 업무 철저	조치완료
		인 사 과	개선요구	- 일선 부서에서 공무직 등(필요시 기간제 근로자 포함)의 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산출·지급하기 위한 '급여관리시스템'이 개선 또는 구축·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	조치완료
27	용산가족공원 내 파크골프연습장 용역 준공검사 부적정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주의요구	- 용역계약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절차·이행 철저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28	공사 하자검사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주의요구	-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이 정해진 공사(물품, 용역)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	조치완료
29	'2017년 남산공원 나무심기 식목행사' 추진 부적정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주의요구	- 수목 수·공급시 거래명세표를 주고 받아 행정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30	주민참여감독관 임명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통보	- 공원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관 임명 등을 준수	조치완료
		재 무 과	통보	-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공사계약 추진 시 관련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의 방안 마련	조치완료
31	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업무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통보	- 건축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㈜우림엘앤에스를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건축업자의 등록관청에 요구하고,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 업무 철저	조치완료
32	북서울꿈의숲 공유재산 관리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징계 및 주의요구	-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북서울꿈의숲 내 총 6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, 공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 징수 및 원상복구 등 조치 - 관리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업무 철저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중
33	서울창포원 전력설비 점용허가 미처리 및 점용수수료 미부과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시정 및 주의요구	- 미처리된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점용허가증 발급과 미부과한 점용수수료를 부과하고 - 관리중인 공원 내 점용허가 업무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
연번	처분요구제목	관련기관	처분유형	조치할 사항	조치현황
34	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·운영 부적정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주의요구	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정을 검토·시행하고,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 업무 철저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중
35	공유재산(낙산공원 매점) 사용·수익허가 입찰 부적정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주의요구	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·수익허가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 철저 (관련자 신분상 조치)	조치완료
36	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통보	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·수익허가 업무 철저	조치완료
37	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시정요구	- 공유재산 임대 관련 지출경비에 대한 공제(환급)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3,820천 원 환급신청하기 바람	조치완료
38	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통보	-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낙찰자 3인에 대하여 「지방 계약법」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하고, 앞으로 유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	조치완료
39	공용차량 관리대장 등 작성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통보	- 관리·운영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관련 장부를 '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'에 의거하여 통일성 있게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	조치완료
40	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관리 소홀	중부공원녹지사업소	주의요구	- 개인영상정보파일 제공 및 관리 시 기록관리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, 정보제공에 따른 활용·파기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 철저	조치완료

2. 지방세 부과·징수 실태 특정감사 (도봉구,성동구)

☐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이번 감사는 자치구의 지방세(시세) 부과·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음

☐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도봉구청, 성동구청

❍ 감사기간 : 2019.8.22. ~ 10.2.

❍ 감사인원 : 감사1팀장 등 8명(공익감사단 2명 포함)

❍ 감사범위 : 2014년 이후 처리한 지방세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업무

☐ 감사 중점 사항

❍ 취득세 등 과소·미신고 및 중과세 누락 여부

❍ 취득세 등 감면 적정 여부

❍ 지방세 감면·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 여부

❍ 재산세·주민세·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부과징수실태 등

☐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시정(금액)			주의 (인원)	통보 (금액)
총건수	신 분 상 조치인원	재 정 상 조치금액	소 계	추 징	감액		
17	9	1,583,111	10 (232,891)	10 (232,891)	- -	1 (9)	6 (1,350,220)

□ 총 평

이번 감사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방세(시세) 부과징수 실태에 대하여 2019.8.22.부터 10.2.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

□ 도봉구와 성동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취득세 등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,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취득세·재산세·주민세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여 총 15,423천 건, 2조 9,000억 원을 징수하였으나,

□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누락,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,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주민세 및 재산세 미부과 등으로 총 279건 1,583백만 원의 부과 누락 사항 등이 적출되었음

❍ 취득세 분야에서는

-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, 납세의무자가 부족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징하여야 함에도 추징누락(7건 1,250백만원)
- 법인의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해당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, 납세의무자가 미 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부과(6건 42백만원)
- 그 외 지목변경·증축·대수선·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.(28건 13백만원)

❍ **지방세 감면 분야에서는**

-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,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누락(5건 100백만원)
-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결정하면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감면처리 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누락(1건 40백만원)
-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,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면제된 취득세 추징 누락(8건 6백만원)

❍ **재산세 분야에서는**

- 재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. 1. 기준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되,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 부족징수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종교단체에 대한 추징누락(18건 7백만원)

❍ **주민세 분야에서는**

- 지방자치단체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, 납세의무자가 미 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부과(31건 8백만원)
- 종업원의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, 납세의무자가 미 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부과(10건 9백만원)
-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는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부과하여야 하나, 일부 부과 누락이 있었음.(144건 13백만원)

❍ **체납징수 분야에서는**

-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으며.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여야 하나 미고지(21건 94백만원)

➡ **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하고 감사결과를 25개 자치구와 공유하여 차후 동일·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**

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감사분야	관련부서	지적내용	처 분 요 구				조치
				처분 종류	신분상 조 치	재정상 조치		
						종류	금액(천원)	
1	취득세 중과 분야	도봉구 부과과	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(AA㈜)	통보 (시정완료)	-	추징	511,814	완료
2		성동구 세무1과	지점 설치 이후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(BB㈜)	통보 (시정완료)	2	추징	593,259	완료
3		성동구 세무1과	본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(㈜CC 외 3)	통보 (시정완료)	2	추징	103,721	완료
4		성동구 세무1과	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(DD㈜)	통보 (시정완료)	1	추징	41,429	완료
5	취득세 일반 분야	도봉구 부과과 성동구 세무1과	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(갑갑 등 6)	시정요구	-	추징	42,471	완료
6		성동구 세무1과, 건축과, 공동주택과	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및 과세자료 미통보 (정정 등 16)	시정요구 주의요구	-	추징	9,359	완료
7		도봉구 부과과	증축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(신신 등 9)	시정요구	-	추징	2,397	완료
8		도봉구 부과과	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(임임 등 3)	시정요구	-	추징	1,656	완료
9	감면 분야	성동구 세무1과	종교단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(GG교회 등 5)	시정요구	2	추징	100,225	완료
10		도봉구 부과과	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부적정(㈜HH)	시정요구	1	추징	39,920	완료
11		성동구 세무2과	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(㈜II)	통보 (시정완료)	-	추징	6,050	완료
12	재산세 분야	성동구 세무1과	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(갑갑갑 등 18)	시정요구	-	추징	6,829	완료
13	주민세 분야	도봉구 부과과 성동구 세무2과	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(㈜JJ 등 114)	시정요구	-	추징	12,938	완료
14		도봉구 부과과 성동구 세무2과	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(㈜LL 등 31)	시정요구	-	추징	8,006	완료
15		성동구 세무2과	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(㈜NN 등 10)	시정요구	-	추징	9,090	완료
16	체납징수 분야	도봉구 징수과 성동구 세무2과	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(㈜OO 등 21)	통보	-	통지	93,948	완료

3.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

☐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☐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상수도사업본부, 강남·강동수도사업소, 암사아리수정수센터

❍ 감사기간 : 2019. 6. 10. ~ 7. 19. (기간 중 20일)

❍ 감사인원 : 안전감사3팀장 등 5명

❍ 감사범위 : 최근 3년 내 추진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

☐ 감사 중점 사항

❍ 상수도 공사의 설계·계약·시공품질·하자관리 적정 여부

❍ 배수지 및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

❍ 수시·정기 시설물 안전점검 이행 및 위험요인 조치 적정 여부

❍ 기타 상수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

☐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사례 (인원)
총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소 계	추징 (회수)	감 액	기 타						
17	30	0	0 (0)	(0)	1 (0)	(0)	(0)	1 (0)	11 (30)	0	1	4	0 (0)	0 (0)

□ 총 평

□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2019.6.10.부터 2019.7.19.(20일간)까지 상수도사업본부, 강남수도사업소, 강동수도사업소,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대상으로 「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」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,

□ **상수도사업본부**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없이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해 1세대 노후상수관 138㎞를 정비 하는 등 배·급수관의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금년내 서울시 상수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'디지털 Seoul Water'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 수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었으나,

□ 이번 감사결과, 아리수정수센터 등 3개 기관는 정수장 내 '염소가스 설비' 안전관리와 민간 대형 수돗물 저수조 수질관리 이행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총 17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음.

□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 및 주의요구하고 사항이 엄중한 경우는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하였으며,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담당자 및 감독자 31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하였음.

□ 현재 행정상 조치 17건 중 14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,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4건은 진행 사항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.

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 제목	처분유형	조 치 현 황	비 고
1	민간 대형 수돗물 저수조 수질검사 이행 여부 확인 소홀(강남 · 강동수도사업소)	주의요구	신분상(훈계 · 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2	수돗물 내 암모니아 질소 성분 검출 수질시험 부적정(암사아리수정수센터)	주의요구	기관경고 조치 완료	조치완료
3	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및 세라믹코트 도포 과다 설계(암사아리수정수센터)	주의요구	신분상(훈계.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4	콘크리트 단면 복구 과다 설계 (암사아리수정수센터)	주의요구	신분상(훈계.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5	조립식 간이 흙막이 과다 설계 (강남수도사업소)	주의요구	신분상(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6	상수도 사각맨홀 상·하부 콘크리트블록 과다 설계 (상수도사업본부, 강남 · 강동수도사업소)	주의요구	재발방지 교육실시	조치완료
		통보	상수도 시설물 기본품셈 개선	
7	정수장 내 유독성 '염소가스설비' 하도급 및 안전관리 부적정 (상수도사업본부, 아리수정수센터)	주의요구	신분상(훈계.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시공자,건설기술자 행정처분(고발), 입찰참가제한	조치중
8	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미배치(이탈)(암사아리수정수센터)	주의요구	신분상(훈계.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시공자,건설기술자 행정처분(고발), 입찰참가제한	조치중
9	건설공사현장 추락방지 고정식 안전난간미설치(상수도사업본부)	주의요구	재발 방지 교육 실시	조치완료
10	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단면 손실된 중고H 형강 자재 임의 사용(상수도사업본부)	주의요구	재발 방지 교육 실시, 신분상(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시공자,건설기술자 벌점 부과	조치중
11	목재데크 기둥 및 기초 시공 불량(상수도사업본부)	시정요구	목재데크 보완시공(환수 12백만원) 신분상(주의) 조치 완료	조치완료
12	건설폐기물 처리비 과다 지급 (강남 · 강동수도사업소,암사아리수정수센터)	주의요구	재발 방지 교육실시 신분상(주의)조치 완료	조치완료

4. 민자투자사업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

☐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안전 등 위해요인 사전제거

❍ 건설공사 목적물의 유지관리 및 이용 효율성 증진

☐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도시기반시설본부

❍ 감사기간 : 2019. 8. 22. ~ 9. 6.(기간 중 12일)

❍ 감사인원 : 안전감사2팀장 등 5명

❍ 감사범위 : 2017년 이후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공사(용역,물품 포함)

☐ 감사 중점 사항

❍ 건설공사의 설계, 계약, 시공, 설계변경, 준공 등 적정성

❍ 굴착, 지진, 화재 등 안전 예방장치의 설계·시공 적정성

❍ 품질·안전 관리 및 정기안전점검 이행 실태

❍ 완료된 건설공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

☐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사례 (인원)
총건수1)	신분상 조치인원2)	재정상 조치금액			소 계	추징 (회수)	감 액	기 타						
13	2	80,690			3 (80,690)	1 (72,498)	(8,192)	2	2 (2)			8		

1)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
2) 조치인원은 징계, 주의,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
※ 시정에 따른 훈계.경고.주의 등은 그 인원만 ( )내에 기재

□ 총 평

○ **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(중)인 민자투자사업 등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, 시공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설계기준, 품질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,**

- 임의 변경 설계(시공), (부분)검사 완료 시설물 미인수·인계,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, 사업장 위험성평가 소홀, 산업안전관리비 부당 청구·지급 등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품질 및 안전, 유지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함
- **총 13건을 지적**하여 2020. 4. 현재 **신분상조치 2명(완료), 재정상조치 81백만원 중 74백만원 회수(감액), 행정상조치 12건 중 8건을 완료**함

○ **주요 지적사항으로는**

- 간선도로의 집수정 용량을 당초 기본계획과 다르게 주무관청 협의없이 용량 축소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·고시
- 재생사업의 빗물 우수관로의 단면을 상류부 빗물유입 고려없이 사업부지 배수면적만을 적용·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 제출
- 지열시스템 트렌치배관을 구조체 내 매설하면서 실정보고 승인내용과 다르게 설치위치를 임의변경 시공
- 물품·공사가 혼재된 계약 발주시 공사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토없이 품질관리·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 및 공사감독자·발주청의 검토·확인, 승인절차 미이행
- '14년, '16년 (부분)검사완료 및 공용개시된 도로시설물을 관리기관에 미인수·이관, 약81백만원 상당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부당 청구 및 지급 등

○ **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**

- 관련업체(시공자, 공사감독자 등)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(주의),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하고 관련공무원 주의 및 부서경고 등의 조치함
- 향후 동일/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관리관 및 관계자 교육 실시하고 지적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

▢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 제목	처분종류	지적내용	조치사항	비고
01	□□간선 지하도로 민자사업 실시설계(집수정 등)·승인 부적정(5p)	통보	-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주무관청과 협의없이 지하도로 시·종점부의 우수채집 집수정 용량을 당초 설계서보다 작게 작성·제출함 -실시협약서에 따라 당초 기본설계대로 집수정 용량 확보 조치	-'20.3. 시·종점부 집수정(펌프)용량 증대하여 규격 변경 조치	완료
02	○○○○○○ 재생사업 배수(우수) 설계 등 부적정(9p)	주의요구	-설계자는 우수관로 설치를 위한 배수설계 시 상류부 빗물유입에 대한 고려없이 사업부지 배수면적만을 적용하여 관로의 단면(직경) 산정 및 설계서를 작성·제출함 -관련공무원 주의조치	-'20.4. 신분상 조치 완료	완료
03	허위 공정(공정률) 보고 및 비계 등 가시설 설치 부적정(13p)	통보	-시공자 및 공사감독자는 미시공 물량인 토목·석공사 등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공종 보고하고 -외부강관 비계의 벽 이음재를 설계물량보다 적게 설치함 -관련자 벌점부과 조치	-'20.1. 벌점부과 검토보고(벌점부과 예정)	이행중
04	지열시스템 트렌치배관의 설치위치 임의변경 시공 등(19p)	통보	-지열시스템 구매설치 시공자 등은 트렌치배관의 위치를 임의변경하여 설치 및 검측·검사함 -트렌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 내 변경 매설에 대해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시공·검측 관련 세부기준이 없고 중요 변경사항에도 미포함되어 있어 타당성 검토 등 없이 시공 -관련자 벌점 부과 및 트렌치배관의 구조체 내 매설 시 성능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(요구)	-'20.2.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지침 개선의뢰 (벌점부과 예정)	일부완료 (이행중)
05	지열시스템 구매설치 관련 품질시험계획 누락 등 업무소홀(27p)	통보 주의요구	-물품·공사가 혼재된 지열시스템 구매설치는 공사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품질시험계획·안전점검계획 수립 미비, 공사감독자·발주청의 검토·확인 및 시정(보완),	-'20.2. 관련자(시공자 및 공사감독자) 주의조치 공사·물품 혼재된 물품구매 계약 관련 기준 마련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	완료

			승인절차 미이행함 -관련자 및 발주청 경고 등 조치, 물품·공사를 혼재하여 발주하는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발주 기준 마련 조치		
06	(부분)검사 완료 시설물 인수·이관 지연 (36p)	시정요구 통보	-부분 검사하여 각각 '14년, '16년에 공용개시된 도로시설물을 관리기관에 미인수·이관함 -기성부분 검사완료 시설물은 관련절차에 따라 인수 조치하고 관리기관은 기성부분 검사완료 시설물의 이관 관련기준 개선조치	-'19.12. 관리기관에 인수이관 완료 ※"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방안"('19.12.13.) 마련	완료
07	위험성평가 실시 부적정(40p)	시정요구 통보	-시공자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(정기)를 실시하면서 전체 12개 작업공종 중 7개 공종은 정기평가를 미실시함 -전체 공종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및 관련자 주의 조치	-'19.12. 위험성 평가 -'20.3. 관련자(시공자, 공사감독자) 주의 조치	완료
08	안전검사 미필 기계(크레인) 사용 등 안전관리 부적정(43p)	통보	-시공자는 안전검사 미필 크레인을 34일간 임의 투입·사용 -안전검사 미필기계 사용·소유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"과태료" 및 관련자 벌점 부과 조치	-'20.1.~3. 벌점위원회 상정 및 과태료 부과의뢰 (벌점부과 예정)	이행중
09	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재사용 및 목적외 사용(46p)	시정요구 통보	-14건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요청·지급함(81백만원) -부당지급 금액 환수(감액)하고 시공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"과태료" 부과 조치	-'19.12.~'20.2. 감액조치 및 고지서 발부 ·총74백만원 환수(감액) 조치 완료 (나머지 금액 조치중) -'20.1.~3. 과태료 부과의뢰 및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	일부완료 (이행중)

□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

연번	처분요구 제목	건 명	조치사항	비고
01	'♤♤~▩▩터널 도로 건설공사(1공구)' 집수정 설계 부적정	-「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(2012년)」 및 「공사 설계보고서 및 수리계산서 등」(3.1.5) 집수정에 따르면 집수조의 할증은 필요용량의 1.2~1.5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건 공사의 집수조 필요용량은 할증 1.5를 적용한 504.06㎥가 되어야 하나 설계용량은 568㎥를 적용함 -그런데 집수조 용량 산정을 위한 수리계산 시 월류벽 높이를 2.1m가 아닌 2.5m를 적용(할증율은 1.5배 적용)하여 이를 재계산한 결과 필요용량 504.06㎥보다 부족한 487.2㎥가 되는 등 수리계산이 불일치함 -설계도면과 수리계산서 상의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조치 할 것	-집수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산정(487.2㎥)된 부분에 대해 집수조 폭을 8.0m에서 8.6m로 변경하여 필요용량을 충족하도록 설계에 반영 조치함	완료
02	임시가설물에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	-6개 공사장에서 임시가설물(비계 등)을 설치 시 안전인증기준 등에 미인증된 가설기자재(동바리 등)을 현장에 반입 사용함 -인증받은 가설기자재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 교육 조치	-'20.1.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	완료

5.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 감사

☐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,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의 설계·시공·준공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기관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

☐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서울주택도시공사
❍ 감사기간 : '19.10.14.(월) ~ 11.12.(화).(기간 중 16일)
❍ 감사인원 : 안전감사3팀장 등 4명
❍ 감사범위 : 최근 3년 내 추진된 택지조성, 주택건설사업 등의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 전반

☐ 감사 중점 사항

❍ 건설공사 설계·시공·준공 과정의 적정성
❍ 공사 중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성
❍ 계약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발생여부
❍ 기타, 공사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및 시민 불편사항 등

☐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
총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소계	추징 (환수)	감액	기타 (재시공)					
8	20	16,294		1 (1)	2 (16,294)	0 (0)	2 (16,294)	0 (0)	5 (19)	0	0	0	0

□ 총 평

□ 이번 감사는 2019. 10. 14.부터 2019. 11. 12.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택지조성, 주택건설사업 등 공사에 대하여 설계 · 시공 · 품질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.

❍ 감사 결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나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, 다만, 건설공사 설계기준 미준수 및 임의시공, 공사비 과다 설계 및 지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.

□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, 현재 신분상 조치는 100% 이행 완료(20명), 회수 및 감액 100% 완료(2건 완료), 행정상 조치도 100% 완료(6건 중 6건 완료)되었고, 업체 행정조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('20. 6월 기준)

❍ 아파트 건설공사 중 4개동 89개층 피난계단의 설계기준 미준수 및 시공과 관련하여, 건축법에 위반되게 시공된 계단에 대해 즉시 적법하게 재설계 후 시공하도록 조치함

❍ 인증되지 않은 가설기자재 2,121본과 안전인증 표기를 위반한 가설기자재 12,885본을 사용한 10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가설기자재를 즉시 사용 중지하고 수거 · 반출토록 조치함

❍ 흙막이 가시설 시공시 구조물의 하부를 지지하는 보강재 28개소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공사현장에 대해 즉시 설계도면대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함

❍ 공사비 16,294천원을 과다하게 설계한 2개 현장에 대하여 즉시 감액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공사비 과다설계 · 지급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함

□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, 관련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바, 서울시는 앞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, 감사사례 전파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 제목	처분유형	조치현황	비고
1	○○○○지구 아파트 피난계단 설계 부적정	문책요구	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중
		시정요구	보완시공 완료	
		통보	설계자 벌점부과 예정	
2	교량 받침부 시공 부적정	주의요구	보완시공 및 신분상조치 완료	조치중
		통보	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벌점 부과예정	
3	불량 가설기자재 대여 사용	주의요구	자재반출 조치 및 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중
		통보	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벌점 부과예정 가설기자재 대여업체 고발예정	
4	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	주의요구	보완시공 및 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중
		통보	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벌점 부과예정	
5	신축아파트 벽돌쌓기 시공 불량	주의요구	보완시공 및 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조치	
6	건설근로자용 탈의실 미설치	주의요구	탈의실 설치 및 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조치	
7	건축물 철거 전 폐기물 1차 선별비 과다 지급	주의요구	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과다 지급 공사비(13,018천원) 감액완료	
8	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공종 과다설계	주의요구	신분상 조치 완료	조치완료
		통보	과다 지급 공사비(3,276천원) 감액완료 공사관계자 주의조치 완료	

6. 서울관광재단·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

☐ 감사배경 및 목적

❍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추진, 계약, 인사, 조직, 복무, 수당, 업무추진비,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관광산업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

☐ 추진 내용

❍ 감사대상 : 서울관광재단, 서울문화재단

❍ 감사기간 : 2019. 6. 10. ~ 2019. 7. 19.

감사대상기관	예비 감사	본 감사
서울관광재단	6. 10.(월) ~ 6. 19.(수), 8일	**6. 20.(목) ~ 6. 28.(금), 7일**
서울문화재단	7. 1.(월) ~ 7. 10.(수), 8일	**7. 11.(목) ~ 7. 19.(금), 7일**

❍ 감사인원 : 경영감사2팀장 등 7명(공익감사단 2명 포함)

❍ 감사범위 : ’16.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☐ 감사 중점 사항

❍ 기관별 주요 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, 각종 사업 선정·지원 적정성

❍ 채용 등 조직 및 인사관리, 예산·회계·계약·업무추진비 등 취약분야 점검

❍ 자체·위탁 수익사업 운영관리, 전시장·공연장 등 시설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

❍ 기관 주요 현안사업, 언론 비판 보도 사항 등 내·외부 이슈 확인 점검

☐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총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소 계	시 정 (환수)	감 액	기 타						
9	10	16,000	0 (0)	0 (0)	1 (16,000)	1 (16,000)	0 (0)	0 (0)	6 (10)	0 0	0 0	2 0	0 (0)	0 (0)

※ 훈계·경고는 주의 건수에 포함, 현지조치 10건은 총 건수에서 제외

▢ 총 평

▢ 이번 감사는 서울관광재단 · 서울문화재단 주요사업, 조직, 인사, 계약 업무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기관 운영상의 취약 분야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2019. 6. 10.부터 2019. 7. 19.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

▢ 감사 결과, 기관 운영상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음. 다만 관련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일반입찰 대상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(관광재단), 일부 설계 · 시공물량과 계약서 내 공사내역서 재료물량이 불일치함에도 정산 · 지급(문화재단), 승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승진심사를 실시(관광재단), 참석인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(문화재단)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 총 9건이 확인되었음

▢ 이에 대하여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,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 이를 준수토록 하고 정산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환수하는 등 행정상 조치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,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에 소홀한 담당자 및 감독자 등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책 요구 등 신분상 조치하였음

▢ 현재 행정상 조치 9건 중 7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, 재정산 환수를 위한 협의와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2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, 신분상 조치 10건은 모두 완료되었음

▢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소홀, 관련 규정 미숙지, 잘못된 관행적 업무처리임을 고려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투자 · 출연기관에 사례 전파할 예정이며,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

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 제목 (대상기관)	처분 종류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	비고
1	**일반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** (관광정책과, 서울관광재단)	주의 요구	-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(수의계약 가능) 1항 4호 타목 관련 조항 "물품 등"에 "용역"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적용 수의계약 - 市대행 행사의 원활한 행사 추진과 비용절감 이유로 市선정 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-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-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 철저	○ 관련공문 : 관광정책과-4505('20. 4. 14.), 서울관광재단 감사관-113('20. 3. 13.) - 전 직원 교육실시(관광정책과, 서울관광재단)하여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- 관광정책과, 서울관광재단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	완료
2	**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** (서울관광재단)	주의 요구	-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(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) 1항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받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(G2B)를 이용하여 견적서 접수해야 하나 직접 제출받아 처리 -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-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 철저	○ 관련공문 : 서울관광재단 감사관-113('20. 3. 13.) -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- 전 직원 교육실시하여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	완료
3	**승진 · 채용계획 미수립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** (서울관광재단)	주의 요구	-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인사원칙에는 승진 · 채용 시 사전계획 수립하고 인사운영 방향·기준 등 사전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여야 하나 관련 계획 미수립 - 인사업무 시 관련규정 준수	○ 관련공문 : 서울관광재단 감사관-113('20. 3. 13.) - 직원 승진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인사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조치	완료
4	**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재료물량산출 및 정산 부적정 등** (서울문화재단)	시정 요구 , 통보	- 설계도와 시공 물량은 일치하나 공사내역서 재료물량이 설계도 재료물량과 다르게 산출되었고 이러한 오류를 재단,설계업체, 시공업체, 감리원 모두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계약 및 정산처리 - 공사내역서 재료물량과 시공물량 차이를 재정산 환수하고 시공불량(발코니타일 구배불량) 재시공 조치 -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- 설계용역업체 및 감리원 벌점 부과 등 조치방안 강구	○ 관련공문 : 서울문화재단 감사실-278('20. 4. 14.) - 재정산 및 환수 협의 진행중 - 발코니 타일공사 구배불량 2개소 시공일정 및 방법 협의 진행중 -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- 설계용역업체 및 감리원 조치방안 법규검토 및 재단 자체 제제 방안 수립 예정	진행중

연번	처분요구 제목 (대상기관)	처분 종류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	비고
5	**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** (서울문화재단)	주의 요구	-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(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)관련 재공고 입찰시 낙찰자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,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조건 변경 불가하나 재단은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- 계약 사무수행 시 관련 구정 및 업무처리 철저	○ 관련공문 : 서울문화재단 감사실-278('20. 4. 14.) - 기관 방침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방법 개선 - 전 직원 교육실시하여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	완료
6	**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적정** (서울문화재단)	주의 요구	-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정량평가 점수 합산 오류 - 기술능력평가 배점 부여 한도 설정 시 관련 규정 범위 이상 부여 등 업무처리 소홀 - 계약 사무수행 시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철저	○ 관련공문 : 서울문화재단 감사실-278('20. 4. 14.) - 계약교육 실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요령 공지 - 전 직원 교육실시하여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	완료
7	**임시직 채용 및 운영 부적정** (서울문화재단)	통보	- 임시직 근로자는 일시적·간헐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나 재단의 고유 업무 및 지속적인 정규직 업무에도 임시직 채용하고 있음 - 관련 관련에 부합하도록 임시직 채용 및 운영 방안 강구	○ 관련공문 : 서울문화재단 감사실-278('20. 4. 14.) - '19년 「조직 구조 및 적정 정원 산정연구」에 따른 임시직 단계적 축소방안 마련 - 재단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으로 인력구조 개편 추진	진행중
8	**의사 정족수 미달 등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** (서울문화재단)	주의 요구	- 의사 정족수 미달 등 인사위원회 운영관련 업무 소홀 -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	○ 관련공문 : 서울문화재단 감사실-278('20. 4. 14.) -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- 전 직원 교육실시하여 동일·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	완료